

경상북도교육청 - 헤이룽장성교육청 교류협력에 따른 양해각서(MOU)

대한민국 경상북도교육청과 중국 헤이룽장성교육청은 상호이해 및 호혜의 원칙 아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우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교육협력 및 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에 있어 호혜 평등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3조(협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의거 양 기관의 우선 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류 사업 지원
2. 교사 및 학생 교류 지원
3.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의 이해 구축
4. 기타 상호 합의에 따른 사항

제4조(상호협약)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정기간)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쌍방의 동의하에 본 양해각서를 개정할 수 있다. 그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서면통지 할 경우 해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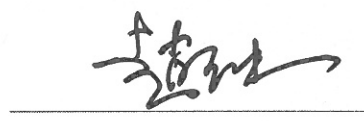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이영우(李英雨)



중국 헤이룽장성교육청
부 청장 조림 (趙琳)



中华人民共和国黑龙江省教育厅与大韩民国庆尚北道教育厅 合作交流谅解备忘录

中华人民共和国黑龙江省教育厅与大韩民国庆尚北道教育厅本着相互理解和互惠的原则，以构建积极的合作关系，增进相互间的友谊为目的，签订以下合作交流谅解备忘录。

1. 目的

本谅解备忘录以建立教育合作与交流的长期合作机制，以及通过相互交流促进共同发展为目的。

2. 基本原则

两厅以平等互惠为原则进行相互交流，特殊情况另行协商决定。

3. 合作领域

根据谅解备忘录，双方的优先合作领域如下：

- a. 支持学校交流工作
- b. 支持教师及学生交流
- c. 通过文化交流，增进两国了解
- d. 其他相互协商事项

4. 协商机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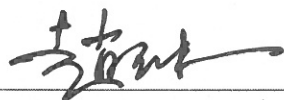
本谅解备忘录中的未尽事宜及执行过程中的具体事项，由双方协商决定。

5. 效力及期限

本谅解备忘录自签署之日起生效，有效期五年。在双方同意下可对本谅解备忘录进行修改。可由其中任何一方另一方提供书面通知予以终止。

本谅解备忘录以中韩两国语言书写，一式两份，双方各持一份。

中华人民共和国
黑龙江省教育厅



赵琳 (조림)
副厅长

2016年1月12日

大韩民国
庆尚北道教育厅



李英雨(이영우)
教育监

2016年1月12日